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특허출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발명을 한 발명자이다. 발명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행위무능력자일지라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이 행위무능력자가 출원인인 경우에는 그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야 한다.

◇국제박람회출품과 특허출원

새로운 제품을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특허가 가능한가?

발명이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이외의 발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승인을 받은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되나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우편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출원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싶은데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출원일은 언제가 되나?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던 직접 제출하던 아무런 관계



가 없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수령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시 구비서류

특허출원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일정형식의 출원서와 기타의 첨부서류를 특허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자가 직접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

다. 이때 도면이 발명의 설명에 필요치 아니하다면 도면첨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출원인이 당해출원의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절차를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령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은 제3자에 대한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재된 발명을 도면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될 만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설명되어야 하고, 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중 애매한 것은 충분히 정의되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정하는 부분임으로 출원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술적인 특징들로서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받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